

제358회 임시회
2017. 8. 30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정이유
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비함(안 제7조)
- 나.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오탈자 수정(안 제2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3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7조제1항에서는,

- 기존의 제1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로 각각 명시된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(기능)들을 안 제1호에서 ‘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’으로 통합하고,
- 기존의 제2호는 ‘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’으로 변경함.
- 기존 제3호에 규정된 ‘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서는 먼저 ‘지방보조금 운영’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3항에 포함되며, ‘성과평가’는 이미 같은 조례 제27조(성과평가)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.

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제27조(성과평가)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안 제29조는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9(재산 처분의 제한)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(도지사)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례안에서 “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.”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바, 이를 “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”로 바로잡음.

나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 조항의 직접 인용을 통한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